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68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정준호 · 이연희 · 임미애
임호선 · 채현일 · 문진석
한준호 · 복기왕 · 안태준
양부남 · 이건태 · 김준혁
염태영 · 강준현 · 이재정
손명수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를 지정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적이고 과도한 납품 지연에 대한 규제 장치는 없는 상황임.

물품 계약 이후 다양한 사유로 업체가 해당 기관에 물품의 납품을 고의적이고 과도하게 지연해서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물품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연하여 피해를 입힌 자를 포함함으로써, 납품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 상의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 ⑤ (생략)	<u>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u> ② ~ ⑤ (현행과 같음)
------------	--